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26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공공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각종 회의와 문화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가족공원내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나.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함(안 제8조)

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는 자”를 “하는 자와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연장지”를 “자연장지 및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중 “장사시설”을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묘지안에서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거나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유골을 납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 ----- ----- ----- 하는 자와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u>자연장지</u>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 <u>자연장지</u> 와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및 관리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u><단서신설></u>	제8조(사용료 및 관리료 등) ① ---- ----- ----- 다만,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은 무료로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u>자연장지</u>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 <u>자연장지 및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u> ----- -----

현행	개정안
1. ~ 9. (생략) 10. <신설> ② ~ ④ (생략)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u>장사시설</u>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u>장사시설</u> 및 <u>장사문화홍보관에</u> 부속된 시설 - ----- ----- ----- ----- -----